

- 2019회계연도 예산기준 -

지방재정공시



|| 목 차 ||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11
5. 재정운용성과	15
6. <참고자료> 유사단체 구분	18

2019년 강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28.

강 화 군 수 (인)

-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4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10억원) 보다 132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2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1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6억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36억원, 기금 38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18%(12.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70%(55.13%)입니다.
-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등 자체수입원의 발굴 등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예산팀

전 화 번 호 : 032-930-33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5,042	4,441	601	4,910	4,435	475
	세 출 예 산	5,042	4,441	601	4,910	4,435	475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9.18	17.32	1.86	16.44	17.87	-1.43
	재 정 자 주 도	61.70	57.93	3.77	65.18	65.35	-0.17
	통 합 재 정 수 지	3	3	0	61	30	31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4	-1	4	4	0
	행 사 · 축 제 경 비 편 성 현 황	49	46	3	47	41	6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나)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강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4,156	496,788	0	3,580	3,7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62,447	372,056	392,187	444,112	504,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3,855	100.0	363,675	100.0	385,009	100.0	433,968	100.0	496,788	100.0
지 방 세	27,402	7.74	30,020	8.25	30,361	7.89	32,181	7.42	37,818	7.61
세외수입	11,957	3.38	12,414	3.41	14,330	3.72	15,659	3.61	24,858	5.00
지방교부세	148,000	41.83	146,000	40.15	156,000	40.52	170,000	39.17	203,000	40.86
조정교부금 등	6,200	1.75	6,200	1.70	6,200	1.61	6,200	1.43	8,200	1.65
보 조 금	147,098	41.57	155,841	42.85	160,411	41.66	182,585	42.07	190,290	38.3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98	3.73	13,200	3.63	17,707	4.60	27,343	6.30	32,622	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4,156	496,788	0	3,580	3,7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62,447	372,056	392,187	444,112	504,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3,855	100.0	363,675	100.0	385,009	100.0	433,968	100.0	496,788	100.0
일 반 공 공 행 정	24,932	7.05	22,711	6.24	24,322	6.32	26,210	6.04	34,749	6.99
공공질서 및 안전	19,681	5.56	13,227	3.64	13,429	3.49	15,097	3.48	28,667	5.77
교 육	3,268	0.92	3,136	0.86	3,237	0.84	6,686	1.54	22,550	4.54
문 화 및 관 광	21,078	5.96	22,175	6.10	27,286	7.09	30,057	6.93	26,320	5.30
환 경 보 호	12,771	3.61	20,207	5.56	21,272	5.53	28,204	6.50	17,203	3.46
사 회 복 지	78,340	22.14	75,454	20.75	80,043	20.79	106,187	24.47	115,841	23.32
보 건	6,540	1.85	9,927	2.73	9,196	2.39	12,991	2.99	11,035	2.22
농 립 해 양 수 산	54,462	15.39	54,756	15.06	47,731	12.40	60,970	14.05	72,090	14.51
산 업 · 중 소 기 업	2,544	0.72	4,853	1.33	8,866	2.30	7,837	1.81	8,482	1.71
수 송 및 교 통	52,153	14.74	49,246	13.54	25,629	6.66	36,186	8.34	26,279	5.2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2,719	6.42	26,669	7.33	55,887	14.52	35,142	8.10	51,463	10.36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4,578	1.29	7,362	2.02	11,541	3.00	7,297	1.68	11,441	2.30
기 타	50,789	14.35	53,952	14.84	56,572	14.69	61,105	14.08	70,667	14.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3,094	514,821	61,727	13.62
강화군	444,112	504,156	60,044	13.52
강화군시설관리공단	8,982	10,665	1,683	18.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강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18%(12.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18 (12.62)	496,788	95,298 (62,676)	401,490	0	0 (32,622)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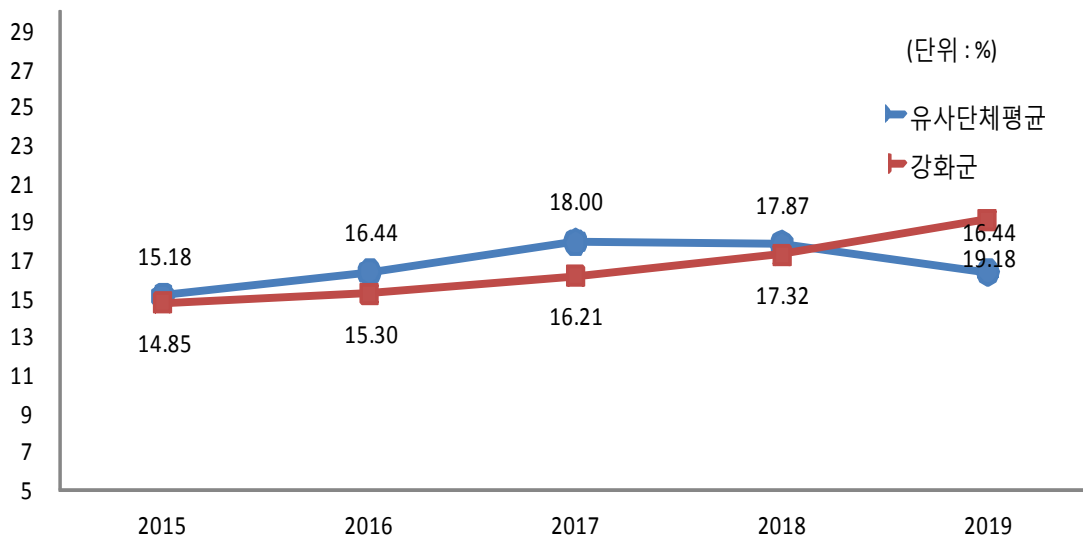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4.85 (11.12)	15.30 (11.67)	16.21 (11.61)	17.32 (11.02)	19.18 (12.62)

- ▶ () 세입개편 후 값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강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70%(55.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70 (55.13)	496,788	306,498 (273,876)	190,290	0	0 (32,622)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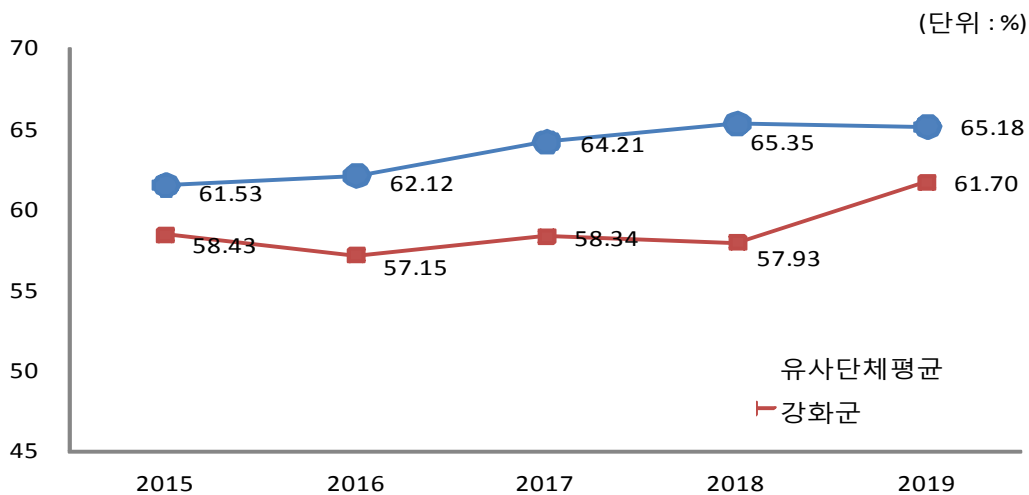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8.43 (54.70)	57.15 (53.52)	58.34 (53.74)	57.93 (51.63)	61.70 (55.13)

- ▶ () 세입개편 후 값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강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4,723	499,861	0	30	30	35,500	499,891	-35,168	333
일반회계	464,166	496,203	0	0	0	32,380	496,203	-32,036	344
기타 특별회계	460	3,550	0	30	30	3,120	3,580	-3,12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97	109	0	0	0	0	109	-11	-1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0,859	-11,780	-18,665	-28,346	-35,168
통합재정수지 2	2,313	1,451	332	322	33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8,211	579,174	600,499	622,922	647,611	3,008,417	3.8
자 체 수 입	60,338	62,272	64,378	66,567	68,857	322,412	3.4
이 전 수 입	437,594	452,969	469,896	487,706	506,540	2,354,705	3.7
지 방 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279	63,932	66,225	68,649	72,215	331,300	4.6
세 출	558,211	579,174	600,499	622,922	647,611	3,008,417	3.8
경 상 지 출	100,250	105,326	110,850	116,347	119,530	552,303	4.5
사 업 수 요	457,961	473,848	489,649	506,576	528,080	2,456,114	3.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 / \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화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0	20,57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3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11,88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8,298

▶ 당초예산 기준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강화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0	0	0	0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당없음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당없음		
일반참여예산사업		해당없음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화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계	24	96	230	213	500,368	437,786	62,582
기획예산실	1	3	5	7	23,226	19,026	4,200
민원감사담당관	1	1	2	1	114	84	29
자치행정과	1	8	13	20	91,385	70,124	21,260
안전총괄과	1	6	8	10	13,797	10,093	3,705
문화관광과	1	6	12	10	11,963	15,136	-3,173
재무과	1	4	15	11	7,491	1,558	5,933
복지정책과	1	4	5	9	42,406	38,567	3,839
사회복지과	1	8	17	17	77,832	70,434	7,398
민원지적과	1	2	7	6	1,374	1,232	142
환경위생과	1	8	15	14	11,879	11,224	654
경제교통과	1	9	23	13	35,130	20,015	15,115
농정과	1	2	9	9	44,712	37,732	6,980
해양수산과	1	2	5	5	9,783	9,408	375
축산과	1	1	3	7	4,769	2,851	1,918
산림공원과	1	2	5	4	18,939	9,012	9,927
건설과	1	8	18	18	30,368	53,478	-23,110
도시개발과	1	3	9	8	13,417	8,698	4,719
건축허가과	1	3	8	5	689	588	101
보건소	1	4	19	15	12,927	13,596	-669
농업기술센터	1	3	14	11	10,837	9,043	1,794
의회사무과	1	1	3	2	856	949	-93
문화재사업소	1	5	5	8	12,690	12,679	11
건설지원사업소	1	2	5	2	655	361	294
석모도자연휴양림	1	1	5	1	2,575	1,723	852
읍면	0	0	0	0	20,554	20,173	38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18(12.62)	61.70(55.13)	23.32	36.42	49.24	89.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99	58	-4
	부단체장		36	
	국장 및 읍면장		1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9	256	-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8	40	-1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7	
	의원국외여비		31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8,197	5,236	-2,96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79	67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86	1,386	-
공무원 일·숙직비		520	520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 지방보조금의 편성액은 자체재원 중 순재원 금액입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00,368	341	0	341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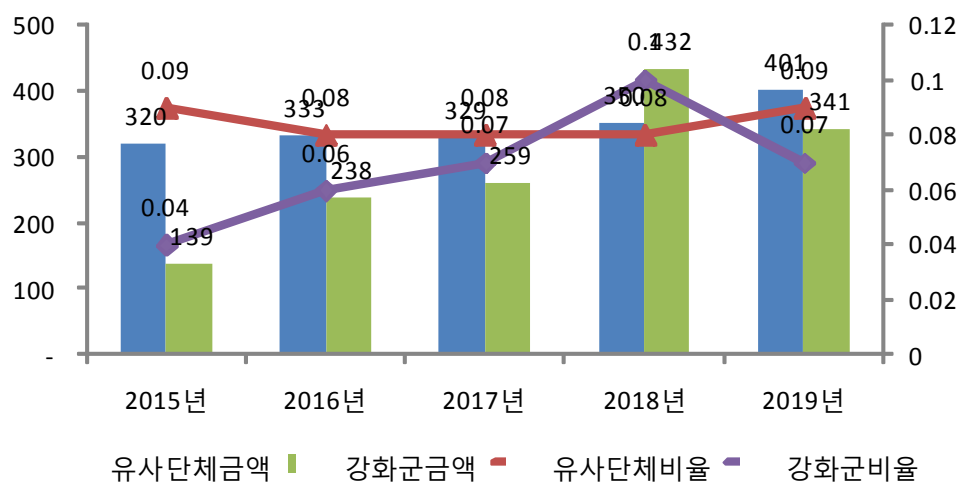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57,781	367,257	389,087	437,786	500,368
국외여비 총액 (B=C+D)	139	238	259	432	341
국외업무여비 (C)	0	0	0	0	0
국제화여비 (D)	139	238	259	432	341
비율	0.04	0.06	0.07	0.10	0.07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강화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6,788	4,9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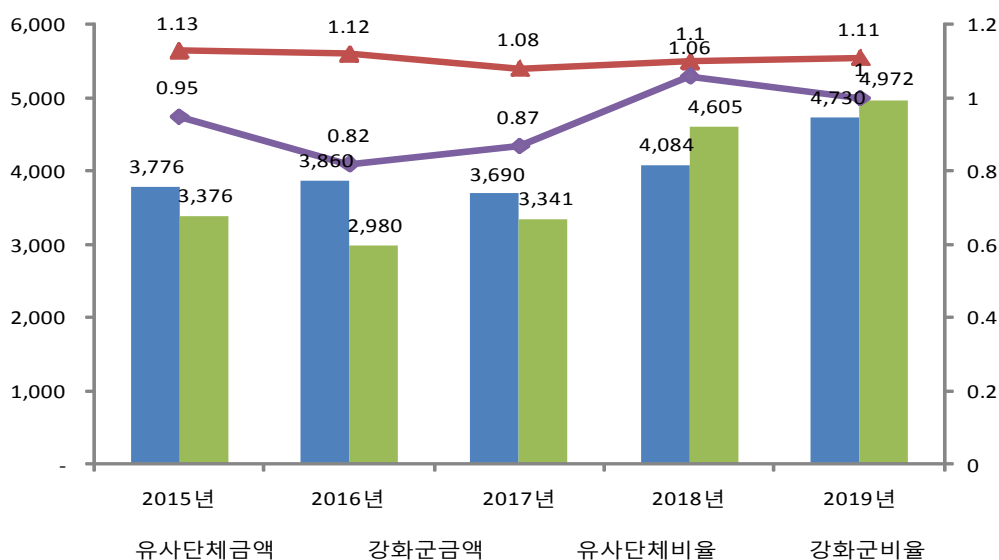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53,855	363,675	385,009	433,968	496,788
행사·축제경비	3,376	2,980	3,341	4,605	4,972
비율	0.95	0.82	0.87	1.06	1.00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831	2,059
인건비 절감	145	51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11
업무추진비 절감	58	7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25	-54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93	2,916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38	-45
지방세 징수율 제고	359	41
지방세 체납액 축소	-755	-1,072
경상세외수입 확충	1,258	2,01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8	-608
탄력세율 적용	-400	-409
지방세 감면액 축소	-12	-11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9년에 우리 강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9년에 우리 강화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남 당진시 경북 안동시	경기 이천시 경기 의왕시 전남 목포시 경북 문경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	경기 안성시 충남 서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주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해남군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경북 울진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합천군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강원 평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하동군	강원 정선군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충북 옥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성주군 경남 거창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 전남 장흥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철원군 충남 청양군 전남 함평군 경남 남해군	강원 인제군 전남 담양군 전남 장성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청송군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북 고령군	강원 양양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봉화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자치구 서울 외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구-(가) 22개 단체	부산 부산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자치구 서울 외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